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7. . .
발 의 자	박교상 의원 외 7명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

(박교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7. . .

발 의 자 : 박교상, 강승수, 김복자, 김정곤
김태근, 박세진, 최경동, 한성희
의원(8명)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고, 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,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,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4조)
- 라.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마. 인문주간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1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문”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.
2. “인문학”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·문학·역사학·철학·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·체험·표현·이해·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.
3. “인문정신문화”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·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)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
2.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
3.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
4.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5.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2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
3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
4.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인문학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

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(非違)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 : 연 1회

2. 임시회의 : 다음 각 목의 경우

가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인문학 업무담당 과장이 맡는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「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인문 활동 지원)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·운영에 관한 사업

2.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업

3.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인문주간 운영)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“구미시 인문주간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포상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연구 활동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,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

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전문인력의 양성·활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,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·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·수집·보존하고, 이를 번역·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·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 제정은 구미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
-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안 제13조(수당), 제15조(인문 활동 지원), 제16조(인문주간 운영), 제17조(포상)임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- ☞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문화관광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박재웅(480-6602)